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35

제출연월일 : 2006년 10월 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보건·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각종 검사 및 연구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인력 및 시험장비 확충이 불가피함에도 청사가 노후하고 협소함은 물론 지반 약화로 인해 시설확충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부득이 다른 장소로 청사를 신축 이전하려는 것이며
- 백두대간 주변의 우수한 자연생태와 많은 사료들을 청소년은 물론 도민들이 보고 체험하게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백두대간 생태 교육장을 신축하고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재산의 취득

《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이전 신축 》

- 위치 :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과학단지내(지원시설용지)
- 사업규모
 - 부지매입 : 10,000m²
 - 건물신축 : 1/4층 5,000m²
- 사업기간 : 2007. 1 ~ 2009. 12(3년간)
- 사업비 : 12,000백만원(도비)

《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신축 》

- 위 치 :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산 1-4(도유림)
- 신축규모 : 1식 850㎡
- 사업기간 : 2007. 1 ~ 2008. 12(2년간)
- 사 업 비 : 2,500백만원(국비 1,250)

3. 예산상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재산취득	재산처분	비 고
계	14,500,000		
○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이전 신축	12,000,000		
○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조성	2,500,000		

4.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5. 관계법령 : 별 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14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관계 법령 발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p> <p>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및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원 이상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p> <p>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p> <p>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p>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4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